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80350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청구의 소

원 고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REDACTED]

[REDACTED]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REDACTED]

[REDAC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강민정, 오범석

변 론 종 결 2020. 10. 16.

판 결 선 고 2020.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9-222 해임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한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수** 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등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6. 1. 1. 이 사건 학교 일본어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었다.

나. 이 사건 학교 일본어학과 학생들은 2018. 3. 30. 이 사건 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원고를 여성비하 및 성희롱 발언, 성추행 등으로 1차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8. 4. 10. 일본어학과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 사과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학교 일본어학과 학생들은 원고에 관하여 동일한 사안으로 2018. 6. 5. 이 사건 학교 교무처에 2차 신고를 하였고, 2018. 8. 20.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이 사건 학교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다.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11. 14.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안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학교 총장은 2018. 11. 16.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이사회를 거쳐 2018. 11. 19.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2. 4.부터 2019. 2. 1.까지 5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끝에, 2019. 2.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이 사건 학교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9. 2. 19.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1. 여성비하 발언 및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피해학생 외 8명의 일본어학과 학생들의 진술에 의하면, 김○○ 학생에게 2017학년도 1학기 수업 중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 결혼 빨리 하겠네.”, “나는 너같은 빨강색이 좋아. 너 입술색.”, “여자는 허벅지가 불어야 이쁘다. 너는 매력이 없다.”, “너는 피부가 왜 그러냐?”라며 일본어로 여드름이라는 별명을 붙여 부르며 옆에 앉은 남학생에게 “너네 커플이네. 여드름 커플.”이라고 말하였고, 수업 중에 여학생들에게 결혼하면 애를 낳을 건지 물어보며 “6명은 낳아라.”, “너희는 애를 낳으려면 몸을 불려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오○○ 학생이 2015. 5.경 체육대회 연습시간 학생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한 여학생에게 “넌 눈이 왜 그렇게 부자연스럽냐? 눈에 뭐했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김○○에게 “그렇게 비치는 옷을 입으니 살랑살랑하니 다리가 예뻐보인다.”라고 말하였고, 조○○ 학생, 오○○ 학생, 여○○ 학생이 2017학년도 1학기 수업 중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들이 문제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안○○ 학생은 수업 중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해서 여름을 좋아한다.”, “남자들은 사랑보다 우정이 먼저지만 여자들은 사랑이 먼저라서 남자들보다 덜하다.”라고 원고가 말하는 것을 들었고, 2017년 학회장 선거 기간에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여자가 무슨 학회장이냐.”라고 발언한 사실을 들었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술도 일치하고 있다.

상기의 진술 외에 교수에 대한 강의평가서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성차별과 인신공격적인 발언에 대해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원고가 여학생들에게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였고 듣는 이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등 제자들을 상대로 성희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여학생에 대한 강제추행(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2015학번인 피해학생은 2016년 1학기 복도에서 원고가 머리를 쓰다듬다가 순간적으로 허리 부분까지 터치하여 매우 놀라고 불쾌함을 느꼈고, 수업 중 외국식 인사라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강제로 악수를 하게 하여 학생이 이행하지 않자 일정 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지 않음으로 피해학생이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참고인들의 진술에서도 피해학생 외에 다른 피해사례가 있으며, 2013년 강의평가서에도 외국식 악수로 인한 불쾌감을 적시한 사실에 비춰볼 때, 원고는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평소 권위적인 모습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여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5.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 을가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임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음에도, 이 사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별지1 기재 발언3, 5, 7, 9, 10, 11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수 학생들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학생 1명의 막연하고 단편적인 진술만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었다. 원고는 별지1 기재 발언4, 6, 8에 관한 언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발언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표현을 왜곡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②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학생에게 별지1 기재 행위1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학생의



진술은 추상적이고 번복되어 믿을 수 없다. 원고는 2014년 이후 학생들에게 별지1 기재 행위2에 해당하는 '외국식 악수'를 한 사실이 없고, 학생들의 진술은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고 추상적이며, 설령 원고의 행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원고가 한 행위의 양상과 정도를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해임 과정에서 양성평등센터가 정식 절차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확대되었으므로 참가인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원고의 개전의 정 및 평소 행동과 근무성적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피해 진술의 주요 내용 및 경위

가) 2018. 3. 30.자 1차 신고서 및 2018. 6. 5.자 2차 신고서

일본어학과의 대표 학생 1명은 자신과 다른 학생 8명의 피해 진술을 취합하여 양성평등센터에 1차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위 대표 학생은 1차 신고서 내용에 다른 학생 4명의 피해 진술을 추가로 취합하여 작성한 2차 신고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였다. 그 중 징계사유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저는 재작년 학회장 선거 때 여러 명의 여학생들로부터 "원고가 '여자가 무슨 학회장이 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수차례 들은 적이 있다. 또 수업시간 중에 "여자들은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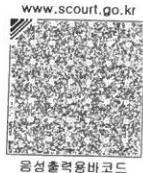


름을 좋아하지 않느냐”라며 “여름에 거의 벗고 돌아다닌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때, 여러 가지 문제로 국민들이 탄핵 시위를 한 일이 있었다. A학생은 당시 원고가 “여자가 대통령을 해서 그렇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라며 몇 명의 학생들을 지목해 동의를 구하셨다고 이야기했다. 당시 그 자리에서 A학생이 “그건 남녀가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의 인성문제 같은데요.”라고 말했을 때는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 B학생은 원고가 늘 ‘여자는~’으로 시작하는 말을 일삼으신다고 하며 “여자는 애 낳으려면 몸 관리를 잘 해야 한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고, 여학생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디를 고쳤느냐(성형수술 했느냐)”라고 물는 일도 잦았다고 말했다.
- C학생은 치마를 입고 수업에 들어갔던 날, “치마가 짧아서 결혼을 빨리 하겠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으며, 하루는 삿대질을 하면서 “너 같은 빨간색이 좋아.”라고 하셔서 의미가 이해가 가지 않아 “네?”라고 되묻자 “네 입술 색 같은 빨강이 좋아.”라고 하셨다고 한다. 어느 날은 아파서 기운이 없어 하자 “너처럼 약해 빠져서 애를 어떻게 낳느냐.”라며, “이래서 우리나라가 안 된다. 여자가 몸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래야 애를 많이 낳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애를 낳을 것인지 물어보셔서 “결혼하면 낳겠죠.”라고 답한 “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6명은 낳아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손을 잡고 손등에 뾰뽀를 한 후에 “나도 했으니 너도 해라.”라고 한 적도 있다고 한다. 굳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가셨는데 C학생의 허리에까지 손이 간 적이 있고, 이를 목격한 학우도 많다고 한다.
- E학생은 채플 셀 모임 때 “너희는 애를 낳으려면 몸을 좀 불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 H학생은 어느 날 스커트를 입고 왔다가 원고로부터 “다리가 예쁘다. 앞으로도 계속 치마를 입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나) 2019. 1. 3.자 교원징계위원회 회의

교원징계위원회 3차 회의에 학생 5명(아래 ①~⑤ 학생)이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직접 진술하였고, 다른 학생 4명(아래 ⑥~⑨ 학생)은 동영상을 제출하여 진술하였



다. 그 중 징계사유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김○○ 학생

- 2017학년도 1학기 수업 중 저를 지목하며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 결혼 빨리 하겠네.”라고 하셨다. 그 후 수업 중 저를 지목하며 “나는 너 같은 빨강색이 좋아. 너 입술색.”이라고 하였다. 또 저에게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이쁘다. 너는 매력이 없다.”라고도 하였다.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정말 불쾌하였고 여러 학생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꼈다.
- 2018학년도 2학기 복도에서 저의 머리를 쓰다듬던 원고의 손이 허리까지 내려갔다. 그 당시 정말 놀라고 매우 불쾌했지만 옆에 다른 친구들이 아무도 보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했다. 또한 외국식 인사라며 제가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제 손을 얹지로 가져가 잡으며 원고가 자신의 손에 뽀뽀를 하였고 저에게도 제 손에 하기를 강압적으로 요구하였다. 맞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모욕감은 아직 잊혀지지 않는다. 결국 제가 뽀뽀를 하지 않자 저를 빤히 쳐다보며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제 손에 뽀뽀를 하라고 하였더라도 교수의 손을 잡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정말 깊은 모욕감을 느꼈다.
- 2017년 1학기 수업시간에 “너는 피부가 왜 그러냐?”라고 하며 일본어로 여드름이라는 별명을 붙여 부르고 옆에 남학생에게 “너네 커플이네, 여드름커플”이라고 하며 웃으셨는데 저는 그 당시 피부가 가장 큰 콤플렉스여서 더 속상하고 불쾌했다.

(김○○ 학생은 진술 후 징계위원회과의 문답 과정에서 ‘치마 얘기, 빨간색 입술 얘기, 허벅지 얘기는 2015년 1학기 이야기이고 5월쯤이었다. 여드름 이야기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는데 2016년이 맞다. 손이 허리까지 내려간 사건은 제가 2학년 때인 2016년이 맞다.’라고 하여 피해사실 발생시점을 정정하였다)

② 조○○ 학생

- 원고의 손키스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저 역시 함께 있는 친구에게 시도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다. 한 친구의 손을 잡고 손키스를 시도하려고 하자 그 친구가 싫다고 하며 손을 뺏다. 그러자 그 친구에게 “다른 친구는 받아준다”라는 말씀을 한 것으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마치 손키스를 받아주지 않는 학생은 외국문화를 모르는 쿨하지 못한 학생인 듯이 말씀하셨다.
- 김○○ 학생에 대해서 여성혐오적인 발언을 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김○○



- 학생이 피해를 입은 이후 푸념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 수업 중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단지 여성이 대통령직을 맡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당시 과대표를 맡고 있던 저에게 의견을 물으셔서 제가 “여성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인간성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자 저의 발언을 무시하시고 다른 학생에게 재차 질문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 ③ 오○○ 학생
- 김○○ 학생에게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남자들이 좋아해서 결혼 빨리 하겠네.”라는 저질스러운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김○○ 학생에게 외국식 인사라며 억지로 손을 잡고 뽀뽀하라는 강압적인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해당 학생 외 다른 친구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수업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래서 여자들이 문제야.”라는 여성비하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수업을 들은 친구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 1학년 1학기 수업 중에 김○○ 학생의 입술을 가리키면서 “나는 빨간색이 좋아. 너 입술색처럼.”이라는 발언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2015년 체육대회 연습시간에 학생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한 여학생에게 “넌 눈이 왜 그렇게 부자연스럽냐? 눈에 뭐했나? 라며 거리낌 없이 한 사람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직접 들었다.
- ④ 여○○ 학생
- 원고가 한 발언은 주로 수업시간 혹은 쉬는 시간에 들은 것이기에 김○○ 학생이 들은 말들은 저도 항상 옆에서 들었다. 원고는 여학생들의 기분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였다. 여학생이 싫어하는 티를 냈에도 불구하고 외국식 인사라며 손깍지를 끼고 잡은 채 손을 돌려 본인의 손에 뽀뽀를 한 것, 피부가 예민해서 트러블이 올라온 친구에게 수업 도중 모두가 들도록 여드름이라고 한 것, 한창 꾸미고 싶을 나이에 짧은 치마를 입은 학생에게 “너는 치마가 짧아서 결혼 빨리 하겠다.”라고 한 것, 입술에 립스틱을 바른 친구를 가리키며 “난 너 같은 레드가 좋아.”라고 한 것. 이 모든 것이 3, 4년 전부터 들었던 말이기에 제가 그리고 친구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가 직접 들었던 것만 해도 저 정도인데 원고가 다른 수업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지 걱정된다.
 - 친구들이 수업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를 하자면, “여자가 대통령이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다.”, “과실에서 머리를 쓰다듬다가 손이 허리까지 내려갔다.” 등등이 있다.



⑤ 김△△ 학생

- 간접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2014학번이어서 14학번 친구들이 손등에 키스를 당했던 일을 직접 피해자가 저한테 그 당일에 바로 말해줘서 기억하고 있다.
-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은, 2015학년도 2학년 때 제가 체육부장이어서 매일 학교를 체육복만 입고 다니다가 어느 날 한 번 쉬폰으로 된 살짝 비치는 롱치마를 입고 학교에 등교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복도에서 지나치던 원고가 저에게 “너는 맨날 그런 체육복만 입고 다니다가 그렇게 비치는 옷을 입으니 살랑살랑하니 다리도 예뻐보인다.”라는 말을, 다른 친구들도 있는 자리에서 하셔서 매우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김△△ 학생은 진술 후 징계위원회과의 문답 과정에서 ‘복장에 관한 이야기는 2015년 1학기였던 것 같다. 그때 봄이라 치마의 소재가 얇은 거라서 2015년 1학기로 기억한다.’라고 하여 피해사실 발생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⑥ 안○○ 학생

- 원고는 수업 중에도 성차별 발언이나 듣기 꺼림칙한 발언을 종종 하였다. 시간이 지나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많지 않지만, 이를테면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해서 여름을 좋아한다.”거나 “남자들은 사랑보다 우정이 먼저지만 여자들은 사랑이 먼저라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덜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등이 그렇다.
- 제가 2017학년도 학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여자가 무슨 학회장이냐”라는 발언을 여러 번 했다는 것을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⑦ 박○○ 학생

- 저는 2015년 당시 원고가 김○○ 학생에게 “너는 치마가 짧아 시집을 빨리 가겠다.”라고 한 것을 들었고,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던 김○○ 학생이 아직까지 기억난다.

⑧ 이○○ 학생

- 상당시간에 원고가 저에게 질문을 했다. 원고는 “너희는 결혼하면 애를 낳고 싶냐.”라고 물으셨고, 저는 낳을 거라고 했지만 다른 친구는 아이 낳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원고는 그 친구에게 “너는 몸이 애 낳기 좋은 몸이니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

⑨ 김□□ 학생

- 저는 대부분의 전공수업을 김○○ 학생과 같이 들었으며 직접 보고 목격한 김○○ 학생



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겠다. 2015년 초반 원고는 수업 도중 김○○ 학생에게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 결혼 빨리 하겠네.”라고 하였고, 수업 중 김○○ 학생을 삿대질하며 “난 너 같은 빨간색이 좋아. 너의 입술색.”이라고 하였다. 저 뿐만 아니라 그 수업에 참석한 모든 학생이 이 발언을 들었다. 또한 2학년 때 직접 목격한 사실은 아니나 김○○ 학생과 다른 학생들로부터 원고가 여러 번 외국식 인사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신체접촉을 강요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손을 가져가 잡으며 원고는 원고 손에, 학생은 학생 손에 입술을 갖다 대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 행위는 당시 전공수업에서도 학생에게 강요하였으며 하지 않으면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빼앗아 쳐다보았다고 한다. 그 외에 1학년 수업 도중 김○○ 학생에게 “피부가 왜 그러냐.”라고 하며 일본어로 여드름이라는 별명을 붙여 부르기까지 하는 등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2,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일본어학과의 피해학생들은 최초 신고 및 교원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피해 당사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수업시간 등 여러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발생한 일에 관하여는 다수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신고와 진술에 참여한 학생들이 최소 9명에서 최대 13명으로 적지 않은 수인데 해당 학생들이 모두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학생 중 5명은 교원징계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징계위원들과 문답을 거치기도 하였다. 피해학생들은 당초 양성평등센터에 1차 신고를 할 당시 학생들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원하였을 뿐 원고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는 원하지 않았으나, 그 후 원고의 태도와 학과 내에서의 2차 가해 등으로 인하여 교무처에 대한 2차 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신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학생들이 원고를 모함하려는 의도로 허위이거나 과장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해학생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달리 그와 같은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학생들의 위와 같은 피해 사실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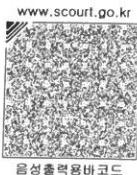
(2) 비록 별지1 기재 발언9, 10 등 일부 행위의 경우 피해학생들의 진술에서 구체적인 일시나 상황 등이 특정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주로 2014학번이나 2015학번인 피해학생들이 4~5년 동안 있었던 일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진술하였던 이상 각각의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시점이나 상황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학생들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서 원고의 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었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일부 피해학생의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하면서 피해 시점을 혼동하여 잘못 진술하였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정정하고 다시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일부 사실에 관하여 세세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가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특



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피해학생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또한 을가 제1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3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서에 원고의 여성비하 발언과 '인사법으로 손등에 키스하는 성희롱'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던 점, 2017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서에 원고의 성차별, 인신공격, 학생들에 대한 신체접촉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다수 있었던 점, 피해학생들 외에 남학생들을 포함한 다른 학생들도 실제로 원고가 '치마가 너무 짧다.'라고 하는 등 여학생들의 외모와 옷차림을 지적하거나, '요즘 짧은 애들은 애를 안 낳으려고 해서 문제다.', '통통한 여자들이 애를 잘 낳는다.', '너는 아이를 몇 명까지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냐.' 등 여학생들에게 출산을 종용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갑 제17, 20, 22호증) 등을 고려하면, 피해학생들의 진술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왜곡된 내용이라고 보기로 어렵다.

(4) 원고는 별지1 기재 행위2의 '외국식 악수'는 손등을 마주 대고 각자 자신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이고, 2014년 이후 해당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4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해학생 중 김○○ 학생이 해당 행위를 직접 겪었다고 진술하였고, 조○○, 여○○ 학생은 원고가 다른 학생에게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을 옆에서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행위의 경위나 전후 정황에 관한 진술도 구체적이므로, 피해학생들의 진술이 간접적이거나 추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학생들은 '외국식 악수'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손등을 마주 대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잡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가 학생의 손을 잡아 가져갈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외국식 악수'를 직접 경



험하거나 목격하였다는 피해학생들은 2014학년도 이후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므로 위 행위가 2014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학생들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3) 징계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



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판결 등 참조).

(2)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도2524 판결 등 참조).

(3)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 학교의 교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자인 여학생들에게 한 외모나 옷차림 등 신체적 특징에 관한 발언은 비록 원고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학생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상대방에게 아무런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발언 중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여성을 구별 짓거나 배제·비난하는 발언은 성차별적 여성비하 발언에 해당하고, 이는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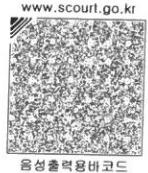
(2) 또한 교수인 원고가 제자인 피해 생의 머리를 쓰다듬고 허리 부위까지 접촉하거나, 외국식 인사라는 명목으로 피해학생들의 손을 가져가 잡고 각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도록 하는 행위는, 원고와 피해학생들의 관계, 행위의 내용과 정도, 별지1 기재 행위2의 경우 피해학생이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손을 끌어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자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사립학교법 제55조, 제6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이 사건 학교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의 제1, 2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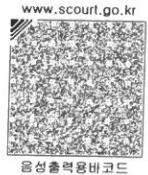


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2029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일반 직업인보다 한층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대학교수임에도 지위를 이용하여 만연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차별적 발언을 하였고,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접촉 행위를 하였다. 이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교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크게 저해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비위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행위는 대부분 수업시간 등에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의 학생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교수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와 원고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피해학생들이 원고에게 항의하기 어려웠으며 설령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묵살하고



음성 출력용바코드

오히려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피해학생들의 1차 신고 이후 학생들의 희망에 따른 양성평등센터의 권유를 받아들여 일본어학과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사과를 하면서 피해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한 잘못된 발언과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이고 외모에 대한 평가 등 농담 비슷한 부적절한 발언들', '감수성이 예민한 여러분들에게 더 없이 아픈 상처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 '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것이 제 나름의 사제 간의 친밀감의 표현이었든 아니었던 상관없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잘못을 축소하고 피해학생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자신의 의도를 변명하였다. 이에 학과 내에서 피해학생들의 문제제기를 비난하고 피해사실 신고자를 찾으려 하는 등의 2차 가해가 이루어졌고, 결국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한 피해학생들의 2차 신고로 이어져 공식적인 양성평등센터의 조사가 개시되었다. 따라서 1차 신고 후 양성평등센터가 징계를 위한 조사 절차를 거치는 대신 원고에게 공개사과를 권유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건이 조기에 매듭지어질 수 있었음에도 징계절차에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③ 이 사건 결정 이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징계기준을 사립학교 교원에 준용하도록 정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행위는 그 기간과 피해학생의 범위, 내용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징계기준에서 제1징계사유인 '성희롱'의 경우 '파



'면-해임'을,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정직'을 정하고 있고, 제2징계사유인 '성폭력'의 경우 '파면'을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이 징계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과중한 징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교육공무원법 제52조는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환우

유환우



판사

박남진

박남진



판사

지선경

지선경



**별지1****징계사유 목록**

여성비하 발언 및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제1징계사유)	
순번	내용
발언1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 결혼 빨리 하겠네.”
발언2	“나는 너 같은 빨강색이 좋아. 너 입술색.”
발언3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이쁘다. 너는 매력이 없다.”
발언4	“너는 피부가 왜 그러냐?”, “너네 커플이네. 여드름커플.”
발언5	“6명은 낳아라.”, “너희는 애를 낳으려면 몸을 불려야 한다.”
발언6	“넌 눈이 왜 그렇게 부자연스럽냐? 눈에 뭐했느냐?”
발언7	“그렇게 비치는 옷을 입으니 살랑살랑하니 다리가 예뻐 보인다.”
발언8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들이 문제야.”
발언9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해서 여름을 좋아한다.”
발언10	“남자들은 사랑보다 우정이 먼저지만 여자들은 사랑이 먼저라서 남자들보다 덜하다.”
발언11	“여자가 무슨 학회장이냐”
여학생에 대한 강제추행(제2징계사유)	
순번	내용
행위1	머리를 쓰다듬다가 순간적으로 허리 부분까지 터치함
행위2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식 인사하며 강제로 악수를 하게하고, 학생이 이행하지 않자 일정 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지 않음



별지2

관계 법령 및 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REDACTED]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9조(징계의 사유)

-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3. 공사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본 대학의 설립정신과 소속기관의 제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때

■ 사립학교법 시행령(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8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2(징계기준)

-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輕重),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2019. 10. 17. 교육부령 제192호로 제정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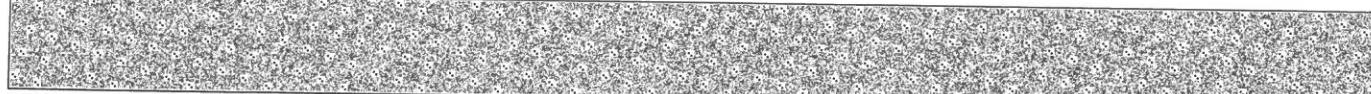
제2조(징계기준)

- ① 「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같은 표 제6호 및 비고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임-강등"은 "해임-정직"으로, "강등-정직"은 "정직"으로, "해임-강등-정직"은 "해임-정직"으로, "연구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구자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제1항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보고, 같은 표 비고 제7호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중 "강등-정직"은 "정직"으로, "파면-강등"은 "파면-해임-정직"으로 본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의 기준)

-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情狀)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4조(징계의 감경)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4.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性)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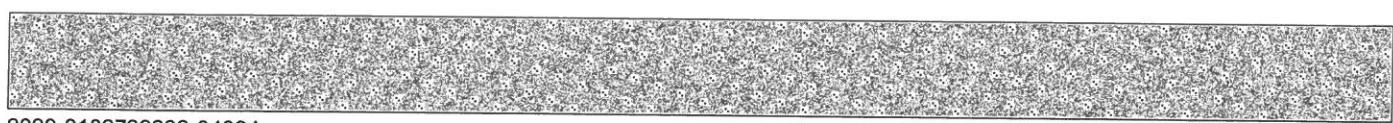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경책
라.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아.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경책

■ 교육공무원법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정본입니다.

2020. 12. 21.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 제해평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